

[별지 제6호서식]

제25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서

【담당부서명: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】

1. 위원회명	정보공개심의회
2. 개최일시	2026. 7. 22. ~ 7. 27.
3. 개최장소	서면심의
4. 참석인원	위원 6명
5. 심의안건 <제55호>	청구인이 피청구인 고양시장에게 요청한 【식사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일체】의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건임
6. 주요내용	본 심의는 아래 사유로 기각함. 청구 내용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, 배치도 등 각종 검토자료 및 심의자료로서 이는 관계 기술자의 노하우 및 설계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보이는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5호 및 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.
7. 회의결과	“기각(비공개)” - 심의위원 6명: 기각 6명

[별지 제6호서식]

제25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서

【담당부서명: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】

1. 위원회명	정보공개심의회
2. 개최일시	2026. 7. 22. ~ 7. 27.
3. 개최장소	서면심의
4. 참석인원	위원 6명
5. 심의안건 <제56호>	청구인이 피청구인 덕양구청장에게 요청한【행주외동 ○○○번지 일원 개발 제한구역법 위반 관련 현재까지의 행정조치 진행사항】의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건임
6. 주요내용	본 심의는 아래 사유로 기각함. 청구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법인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보이는바 따라서 청구내용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함.
7. 회의결과	“기각(비공개)” - 심의위원 6명: 부분인용 1명, 기각 5명